서울특별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

978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도시화,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, 애완동물, 흡연, 대기오염 등 알레르기 질환 악화요인의 증가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증가하고 있음. 알레르기 질환은 전 생애 동안 지속되어 삶의 질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.
- 나. 이에 서울시민의 아토피·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『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』를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·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(재계약)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위탁기간: 3년(2020.1.1. ~ 2022.12.31.)

○ 인 력: 센터장1(비상근), 팀장1(상근), 팀원4(상근)

○ 소요예산: 390,000천원/연(국비50%, 시비50%)

○ 위탁내용

-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(유치원, 어린이집 포함) 운영 및 인증지원
-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
- 교육·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
-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

나. 필요성

○ 알레르기 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물적· 인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, 관계법령

○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

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○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

제6조(건강생활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7조

제7조(서울시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) ② 시장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를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 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질병관리과 직업건강팀 정설희 (☎ 02-2133-7614)